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550
----------	------

제출년월일 : 2013. 9.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조정경기의 저변 확산은 물론 조정경기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허가(안 제4조)
- 나. 사용료(안 제8조)
- 다. 사용료의 감면(안 제9조)
- 라. 이용료(안 제10조)
- 마. 이용료의 감면(안 제11조)
- 바. 위탁운영(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붙임
- 다. 합 의 : 완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2013. 8. 21. ~ 9. 2.)결과 접수된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완료
 - (3) 부패영향평가 : 완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이하 "경기장"이라 한다)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장"이란 그랜드스탠드, 피니시타워, 보트하우스와 그에 딸린 시설을 통틀어 말한다.
2. "모터보트"란 조정 훈련·대회 시 심판이나 중계방송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력선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경기장의 그랜드스탠드, 피니시타워, 모터보트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경기장의 보트하우스 객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경기장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그랜드스탠드는 회의, 세미나, 조정경기의 관람, 중계방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피니시타워는 조정경기의 통제, 심판, 중계방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보트하우스는 선수나 보트의 무게 측정, 보트 보관, 숙박이나 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허가) ① 경기장이나 모터보트를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이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 전에 협의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경기장을 사용·이용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나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나 행사
6.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험 활동 등의 체육 활동
7. 직장 또는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8.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 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9. 그 밖의 신청 순위별

제6조(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한 상행위가 예상되는 경기 또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이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용하거나 조건을 위반

할 때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이용 허가를 받았을 때

3. 사용료나 이용료를 내지 않았을 때

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용할 수 없을 때

제8조(사용료) 제4조에 따른 시설이나 모터보트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되, 무대설치 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실지 사용량에 관하여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따라 후납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 충청북도, 충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충주시에서 후원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

다. 충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이나 관내 각급 학교 조정팀이 모터보트를 사용할 때

2. 반액 감면

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체육·문화·예술단체 등이 주최하는 순수한 행사로서 관람료를 받지 않는 행사

다.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마.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바. 국가대표 조정팀이 모터보트를 사용할 때

제10조(이용료) 제4조에 따른 객실 이용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단장, 부단장, 감독, 단원 이용 시

2. 반액 감액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조정팀 이용 시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조정팀 이용 시

다. 초·중·고·대학선수단, 실업팀 전지훈련 시

라.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 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이용 시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제12조(환불) 시설 사용료나 이용료를 낸 후 사용·이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전용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사용자가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시설이나 모터보트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안전 사고의 예방이나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시설 내에서나 모터보트 운항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사용 시설을 훼손·분실 등을 하였으면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시장은 경기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경기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에 필요하면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경기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운영하게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 책임, 위탁 기간, 그 밖에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고, 시설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수탁자에게 대신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운영 지원) 시장은 경기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7조에 따른 지원금을 위탁시설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제2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위탁 관리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위탁이 취소되면 수탁자는 수탁재산 모두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점검·보고 결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시설의 임대) ① 시장은 경기장의 전부나 일부를 체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산정 등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또는 모터보트 사용료(제8조 관련)

1. 그랜드스탠드

(단위 : 원)

구 분 (층별)	용도	규 모	기 준	요 금			비고	
				평시	하절기	동절기		
제1실(1층) 대회의실	회의 · 세미나실	285.71m ²	4시간 이하	70,000	80,000	80,000		
			1일	130,000	170,000	170,000		
제2실(2층) 조직위사무실	"	325.77m ²	4시간 이하	50,000	70,000	70,000		
			1일	100,000	130,000	140,000		
제3실(2층) FISA사무실	"	165.73m ²	4시간 이하	40,000	50,000	50,000		
			1일	80,000	110,000	100,000		
제4실(2층) 미디어센터	"	324.96m ²	4시간 이하	50,000	60,000	60,000		
			1일	100,000	130,000	130,000		
야외 스탠드		1,100석	4시간 이하	50,000	50,000	50,000		
			1일	100,000	100,000	100,000		

2. 피니시타워

(단위 : 원)

구 분	규 모	기 준	요 금		비고
			평시	하절기	
통제실, 심판실 방송실	214.9m ²	4시간 이하	40,000	50,000	
		1일	80,000	90,000	

[공통]

- 하절기 : 6월 ~ 8월, 동절기 : 12월 ~ 다음년도 2월
- 1일 사용 기준은 8시간으로 하되,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적용
 - 점심시간(12:00~13:00), 저녁시간(18:00~19:00), 시설 설치·철거를 위한 시간은 사용시간에서 제외
- 무대설치 시 전기요금 별도(관허요금 가격)

3. 모터보트

(단위 : 원)

구 분	사양		기구명칭	기준	요금	비고
	출 력	승선정원				
심판정	30마력	3명	심판정 1호	1일	20,000	- 보트운항에 사용되는 연료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심판정 2호			- 1일 사용기준은 8시간 으로 한다.
			심판정 3호			-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 시간으로 적용
			심판정 4호			
			심판정 5호			
			심판정 6호			
중계정	50마력	9명	중계정 A호	1일	30,000	-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 시간으로 적용
			중계정 B호			

[별표 2]

보트하우스 객실 이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호실 구분	시설 규모	기준	금액	비고
201	64.7 m ² (7인)	1일	비수기	30,000
			성수기	50,000
202 ~ 217	32.2 m ² (4인)	1일	비수기	20,000
			성수기	30,000
218 ~ 225	42 m ² (5인)	1일	비수기	20,000
			성수기	30,000

[별표 3]

시설 사용료 또는 이용료 환불(제12조 관련)

구 분	적 용	환불규정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전액 환불함
그 밖의 사유로 취소할 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이용)료 50% 공제 후 환불
	사용일 또는 미사용	환불하지 않음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	기 본 시 설	1. 그랜드스탠드 2. 피니시타워				
	부 속 시 설					
	무 대 설 치	총 전기사용 신청량 : kw				
사용기간·시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간)					
사 용 목 적						
주 요 행 사 내 용						
사 용 요 금						
감 면 사 항						
붙임 : 행사 계획서, 감면 수혜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충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보트하우스 객실 이용 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인	성명 (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인원	계	남		여	
이용목적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박일)				
이용희망실	제 호실 (인실)				
이용요금					
감면사항					
붙임 : 감면수혜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충주시 탄금호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객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충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모터보트 사용 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기구	선 택	1. 심판정	2. 중계정				
	기 구 명 칭						
	대 수						
사용기간·시간	년 년	월 월	일 일	시 시	분부터 분까지(일 시간)	분까지(일 시간)	
사용 목적							
사용 요금							
감면 사항							
붙임 :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사본 1부. 2. 감면 수혜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모터보트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충주시장 귀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의안명 : 충주시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안
- 관련조문

제17조(운영 지원) 시장은 경기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3. 미첨부 사유

- 본 제정안에 따라 시장은 경기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현 단계에서 조정경기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조정경기장의 운영과 관리에 지원할 금액에 대한 규모를 알 수 없는 점을 감안,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5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 신동식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 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